

- (③,④)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,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감면율을 재설계하면서 연장
 - 벤처육성촉진지구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하여 감면율을 재설계^{*}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감면 기한 5년 적용
 - * 수도권 지역 취득세 50% → 35%, 재산세 35% → 20%
 - 지식산업센터 시행자에 대해 지역별 차등 감면율^{*} 적용,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 유지(취·재 35%)
 - *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에 대해 수도권 지역 취득세 35% → 15%, 재산세 35% → 15%
- (⑤~⑦) ⑤⑥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⑦협동화실천계획 승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, 타 감면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고려 감면 종료
 - * ⑤교육시설용 부동산의 경우 신규 취득이 없고, ⑥분양·임대용 건축물의 경우 산업단지·지식산업센터 내 소재로 중복 적용 가능, ⑦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은 협업화 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감면 운영 실익이 적음
- (⑧,⑨)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측면을 고려 감면 연장